비영리법인 업무 매뉴얼

2026. 6.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본 편람은 관련 법령 및 법무부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등을 참고하여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본 편람의 내용은 개별 사안에 대한 실무자의 판단 및 재량권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과 본 편람의 서술이 합치하지 않거나 법령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령 및 규정이 적용됩니다.

< 목 차 >

Ⅰ. 법인제도 개설 ····· 1

Ⅱ. 비영리법인 업무개요 ····· 5

Ⅲ. 비영리법인의 세부업무별 안내 ····· 9

1. 주무관청의 허가 ····· 9

1) 법인설립 허가 ····· 9

2) 정관변경 허가 ····· 19

3) 기본재산처분 허가 ····· 23

4) 잔여재산처분 허가 ····· 25

2. 보고 ····· 26

1) 재산이전 보고 ····· 26

2) 등기사항 보고 ····· 26

3. 신고 ····· 27

1) 해산신고 ····· 27

2) 청산종결의 신고 ····· 28

4.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28

5. 행정조치 ····· 30

6. 벌칙 ····· 32

Ⅳ. 공익법인의 세부업무별 안내 ····· 33

1. 주무관청의 허가 ····· 33

1) 법인설립 허가 ····· 33

2) 정관변경 허가 ····· 38
3) 기본재산 변동에 따른 허가 ····· 39
2. 주무관청의 승인 ····· 46
1) 수익사업의 승인 ····· 46
2) 법정정수 초과 임원정수 승인 ····· 47
3) 임원취임 승인 ····· 47
4) 상근임직원정수 승인 ····· 48
5) 이사회소집 승인 ····· 49
6) 기부금 사용 승인 ····· 50
3. 보 고 ····· 51
1) 재산이전 보고 ····· 51
2) 등기사항 보고 ····· 51
3) 사업계획 등의 보고 ····· 52
4. 신 고 ····· 53
1) 해산등기 신고 ····· 53
2) 청산종결등기의 신고 ····· 53
3) 기본재산 처분 신고 ····· 53
4)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신고 ····· 54
5. 주무관청의 감사추천 ····· 55
6. 법인업무의 검사·감독 ····· 56
7. 행정조치 ····· 56

1) 법인설립허가 취소 ····· 56
2)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 57
3) 수익사업에 대한 시정 또는 정지명령 ····· 58
4) 보통재산의 기본재산 편입조치 ····· 58
8. 벌 칙 ····· 58
Ⅴ. 법인의 세제적격단체 신청 등 ····· 59
Ⅵ. 주요 민원 사례 ····· 60
[별첨] 법인 업무 서식 및 작성 예시 ····· 67
[참고] 공문 작성 예시 ····· 119

Ⅰ. 법인 제도 개설

□ 법인의 의의

ㅇ 자연인 이외에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 즉, 일정한 조직을 가지는 사람의 집단(社團) 또는 독립의 목적재산(財團)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

□ 법인의 종류

ㅇ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 사람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체, 구성원이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으며 단체 자체가 구성원이 될 수 있음

-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출연된 재산에 대해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

ㅇ (영리성에 의한 분류)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 : 근거(민법 제39조, 상법),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설립되어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음

- 비영리법인 : 근거(민법 제32조, 공익법인법, 기타개별법),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법인활동을 통한 이익은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고 법인 고유의 재산으로 적립됨

*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이란 '사원'(일반적으로 회원을 의미)을 말하며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근로자)의 개념과는 구별됨

ㅇ 실정법상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별하는 이유는 그 법인이 민법 또는 특별법상의 법인인가 아니면 상법상의 상사법인인가를 구별하는 데 있다.

ㅇ 통설은 상법상의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하고, 상법 이외의 민법 또는 다른 특별법상의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ㅇ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상법법인/민법법인/공익법인/특수법인

- 상법법인 : 설립근거(상법 제169조이하)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5가지로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해당

- 민법법인 : 근거(민법 제31조이하)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의미하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통상 "비영리법인"이라고 칭함

- 공익법인 : 근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성격상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면서, 특히 공익법인법상 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함. 즉 공익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지만, 그 중 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됨

- 특수법인 : 근거(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변호사법 등 각종 개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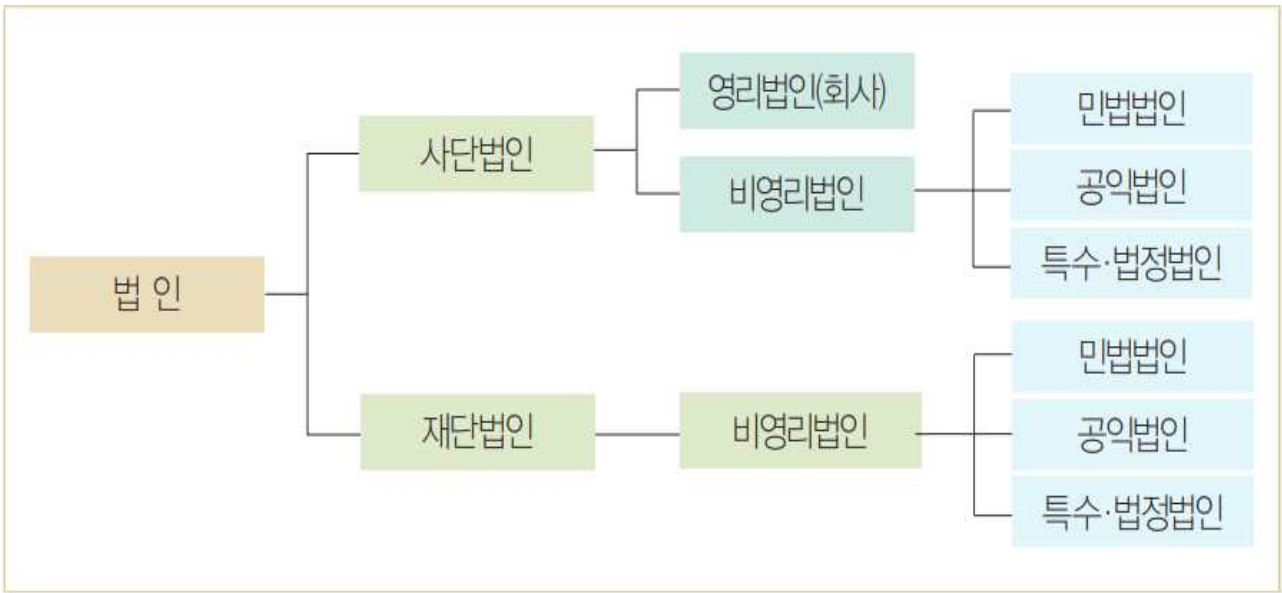

□ **비영리법인 관련 법령**

ㅇ「민법」 제3장 법인 : 법인 관련 일반규정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부령)(이하 “문체부 규칙”이라 약칭)

ㅇ「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시행령”이라 약칭)

□ **참고사항**

ㅇ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허가 신청 시 정관에 나타난 단체의 설립목적, 사업내용, 회원의 자격, 출자방법이나 자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구성원의 이익분배가능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법인의 영리성을 판단하여야 함

- 영리목적 사업 추구 시 허가신청 반려 필요.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무방하며 이 경우에도 그 수익은 법인의 사업목적에 충당되어야 하고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했을 경우 사업경영 범위내에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음

ㅇ **(기관의 구성)**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인 이사, 감독기관인 감사,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로 구성(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음)

[비영리법인의 기관]

1. 이사

ㅇ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함

ㅇ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음

ㅇ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음

ㅇ 이사의 임면방법에 대하여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

ㅇ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

2. 이사회

ㅇ 이사회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관(공익법인의 경우는 필요기관)

3. 사원총회(사단법인)

ㅇ 사원총회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

4. 감사

ㅇ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음(현행 민법상 감사는 임의기관이며 공익법인의 경우는 필요기관)

ㅇ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님

□ 유사개념 간 구별

○ **(공익법인)**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상기 사업들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익법인법」을 근거로 허가받은 법인이 아니라면 공익법인이 아님**
-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도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포함됨. 즉, 공익법인은 「공익법인법」을 따르되,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받는 것임
- 공익법인은 「민법」상 설립된 통상적인 비영리법인에 비해 더 많은 법정의무를 부담하고 주무관청의 강화된 관리·감독을 받는 대신 법으로 정하는 조세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음(「공익법인법」 제15조)

<참고> 법무부 주요 민원사례 (2022 법무부 비영리법인 업무 편람 337p)	
Q	장학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 아닌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 가능한지 여부
A (법무부)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지 아니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으로 설립할지 여부는 법인 설립자의 자유라 할 것이며, **장학사업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공익법인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등에서 규정하는 세법상 개념으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며, 세법상 의무를 지게 됨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문체부 소관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바목에 따른 세무서장의 추천과 재정경제부 장관의 지정·고시 필요*****(구 지정기부금단체)

* 단, 종교단체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공익법인등'으로 인정(상증세법 제12조제1호)

** 종전에는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곧바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속하였으나, 2018년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통상적인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서장 추천 및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고시 필요

※**(참고)**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과 세법상 '공익법인등'은 별개의 법체계를 따름. 즉, 「공익법인법」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세법상 '공익법인등'에 대해 규정된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세법상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 된다고 하여 「공익법인법」에 규정된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님을 유의

Ⅱ. 비영리법인 업무 개요

구 분	비 영 리 법 인	공 익 법 인
허 가	1.법인설립허가(민법 제32조)	1.좌동(민법 제32조, 공익법인법 제4조)
	2.정관변경허가 - 사단법인(민법 제42조) - 재단법인(민법 제45,46조)	2.좌동(민법 제42.45.46조,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0조)
	3.잔여재산처분허가(민법 제80조제2항)	-
	※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변경 허가사항 (규칙 제6조 참고)	3.기본재산 변경허가(공익법인법 제11조제3항, 영 제17조)
		4.장기차입 허가(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영 제18조제1항)
		5.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제3호, 영 제18조의2)
승 인		1.수익사업 승인(변경승인 포함) (공익법인법 제4조제3항, 영 제11조)
		2.임원정수 증감 승인 (공익법인법 제5조제1항)
	※ 정관에 기재된 경우 승인	3.임원취임승인(공익법인법 제5조제2항, 영 제7조)
		4.상근임직원의 정수승인 (공익법인법 제5조제9항 및 영 제14조)
		5.이사회소집 특례승인(공익법인법 제8조제4항, 영 제15조)
		6.기부금사용 승인(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2호)
보 고	1.설립관련 보고(규칙 제5조제1항) - 재산이전 보고	1.좌동(규칙 제5조제1항, 영 제8조)
	2.등기 보고(규칙 제5조제2항) - 설립등기(민법 제49조) - 분사무소 설치등기(민법 제50조) - 사무소이전등기(민법 제51조) - 변경등기(민법 제52조)	2.좌동(규칙 제5조제2항, 영 제9조)
	3.감사의 법인의 위법.부당사항 보고 (※정관 규정)	3.좌동(공익법인법 제10조제2항)
		4.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공익법인법 제12조제2항,영 제19조)

신 고	1.해산신고(민법 제86조)	1.좌동
		2.좌동
	2.청산종결의 신고(민법 제94조)	3.기본재산 변경 신고(공익법인법 제11조 제4항1호, 영 제18조의3)
		4.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신고 (공익법인법 제11조제4항2호, 영 제18조의3)
추 천	-	1.감사추천 (공익법인법 제5조제8항, 영 제13조)
검 사 감 독	1.법인사무의 검사감독(민법 제37조)	1.좌동(민법 제37조, 공익법인법 제14조)
	2.검사감독상 불가피한 경우 관계자료 제출 명령(규칙 제8조)	2.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업무보고서 제출 명령(공익법인법 제17조제1항)
	3.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사무 및 재산 사항 검사(규칙 제8조)	3.업무재산관리 및 회계감사를 통한 지도(공익법인법 제17조제2항)
행 정 조 치	1.법인설립허가 취소(민법 제38조)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시 청문 실시 (규칙 제9조))	1.좌동(민법 제38조, 공익법인법 제16조) (청문실시(공익법인법 제16조의 2))
		2.이사의 취임승인 취소(공익법인법 제14조제2항)
		3.수익사업에 대한 시정 또는 정지 명령 (공익법인법 제14조제3항)
		4.보통재산의 기본재산 편입조치 (영 제16조제3항)
벌 칙	(민법 제97조)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민법 법인의 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민법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민법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민법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민법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민법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공익법인법 제19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공익법인법 제19조제1항) -승인없는 수익사업 등을 한 경우 -허가 내지 승인 없는 기본재산 처분 등을 한 경우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지도,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도 아니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공익법인법 제19조제2항) -수익사업 시정 또는 정지명령 위반 -사업계획·예산 및 사업실적·결산의 미제출, 미보고 및 허위제출, 허위보고 -주무관청 감사를 거부.기피 -감사의 직무거부 또는 직무유기
		3.이사 또는 감사가 상기 1.2의 죄를 범했을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처함(공익법인법 제19조제3항)

□ 비영리법인 vs 공익법인 주요 차이점

구 분	비 영 리 법 인	공 익 법 인
근거	ㅇ민법, 문체부 규칙	ㅇ민법, 문체부 규칙, 공익법인법
사업계획서	ㅇ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ㅇ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의 수지예산서
이사	ㅇ정수에 관한 별도 규정 없으나, 이사는 필수로 두어야 함(민법 제57조)	ㅇ정수 5인 이상 15인 이하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증감 가능
감사	ㅇ선택적 설치(민법 제66조)	ㅇ필요적 설치, 정수 2인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증감 가능
이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	ㅇ별도 규정 없음 (별도 규정 없음)	ㅇ최대 4년, 정관으로 정함 (최대 2년, 정관으로 정함) ※ 이사와 감사는 연임 가능
이사회	ㅇ별도 규정 없음	ㅇ필요적 설치
임원 취임	ㅇ주무관청 승인사항 아님	ㅇ주무관청 승인사항
임원 결격사유	ㅇ별도 규정 없음	ㅇ규정 있음(공익법인법 제5조제6항)
외국국적 이사의 수 제한	ㅇ별도 규정 없음	ㅇ규정 있음(공익법인법 제5조제4항)
특수관계자 임원 제한	ㅇ별도 규정 없음	ㅇ규정 있음(공익법인법 제5조제5항, 제8항)
상근임직원 정수	ㅇ별도 규정 없음	ㅇ주무관청 승인 사항
기본재산 처분	ㅇ정관변경 사항(별지 목록의 변경)	ㅇ주무관청 허가 사항
정관변경	ㅇ주무관청 승인사항	ㅇ주무관청 승인사항
수익사업	ㅇ정관으로 정함(주무관청 승인사항 아님)	ㅇ주무관청 승인사항
예결산서 제출	ㅇ해당없음(문체부) ※부처별 규정 상이	ㅇ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사업계획 제출 ㅇ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사업실적 및 결산 제출
재산목록 제출	ㅇ해당없음(문체부) ※부처별 규정 상이	ㅇ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기본재산 목록 제출
잔여재산 귀속	ㅇ정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귀속	ㅇ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

□ 비영리법인 관련 우리부 위임전결규정(‘26.2.19. 시행)

[별표]

문화체육관광부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제6조제1항 본문 관련)

일련번호	단위업무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국장 등	정책관·기획관 등	과(팀)장	과원
20	법인	설립인허가, 취소			○			
		허가사항 변경					○	
		자진해산						○
		정관개정					○	
		임원 선임보고 및 승인					○	
		재산처분승인					○	
		현황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Ⅲ. 비영리법인의 세부업무별 안내

1. 주무관청의 허가

1) 법인설립 허가

□ 근거법령

ㅇ「민법」제32조,「문체부 규칙」제3조, 제4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사항임

<참고>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신청서류(문체부 규칙 제3조)

연번	구분	상세내용
1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ㅇ 문체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로 작성(건물명, 호수 포함) **ㅇ 사무소 소재지 설립등기(민법 제33조)를 위한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별첨** - 건물사용 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소유권 입증 서류 등
2	발기인 인적사항	**ㅇ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 발기인의 실거주지의 도로명 주소(건물명, 호수 포함) - 약력은 법인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기재 **ㅇ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3	정 관	**ㅇ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 정관 법정 기재사항(민법 제40조) 누락 여부 확인 - 설립자(발기인)의 기명날인(민법 제40조, 제43조) -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을 정관의 별지로 작성
4-1	재산목록	**ㅇ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기재) 1부** - (기본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 - (운영재산)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

		1. <기본재산>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 1) 기본재산이 정관 별지로 구성되므로,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 없이 처분 불가 * 기본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기본재산 목록은 정관 별지로 첨부 2)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등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를 예시로 참고 3)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용이한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 재산 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및 임차보증금 등)이어야 함 * 권리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정되어 소유권 이전이 용이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은 가급적 지양 4) 기본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방법 및 발생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관련 증빙 첨부 ※ 재단법인은 그 특성상 기본재산을 반드시 요하는 반면, 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을 필수로 요하지는 않음 2. <운영재산(보통재산)>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종류, 수량 및 금액 등 기재) ex) 사단법인의 회비 수익,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수익, 임대수익, 배당소득 등 **ㅇ 재산 관련 증명 서류 각 1부** - (예금, 주식, 채권 등) 예금잔고 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이자·배당소득 증명서류 등 행정기관·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임대차계약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수익확인서 등 - 기타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및 그 가치를 증명하는 서류 등 ※ 공무원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함
4-2	**재산출연 관련 서류**	**ㅇ 재산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을 날인 - 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필요시 재산출연증서를 공증받도록 함 **ㅇ 출연재산 관련 증명 서류** - (예금, 주식, 채권 등) 예금잔고 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이자·배당소득 증명서류 등 행정기관·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임대차계약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수익확인서 등 - 기타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가치 등을 증명하는 서류 ※ 4-1 재산사항 관련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 가능
5	**사업 계획등**	**ㅇ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기본방향, 주요 추진사업, 주요사업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수지예산서의 내용이 담기도록 작성

		-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재원을 기재하는 것은 지양 * 보조금, 후원금(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관련 공문, 확약서 등 관련 증빙 확보 필요
6	**임원사항**	**ㅇ 임원 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 기재 서류 1부** -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 임기 등 포함 **ㅇ 임원의 취임승낙서 1부** - 취임 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 기재,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승낙일자 등을 명시하고 기명날인
7	**회의록**	**ㅇ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단, 사단법인에 한함.** -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의 의결에 관한 사항 포함 - 발기인 전원 기명하고 인감날인 - 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 인감 간인 **ㅇ 창립총회 사진, 참석자 서명부, 위임 시 위임장 등 첨부**
8	**기타**	ㅇ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과거 활동 실적 등 **주무관청이 법인설립 허가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 참고		ㅇ「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서명으로 각종 구비서류의 인감증명서 제출 및 인감 날인을 대체**할 수 있음

ㅇ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ㅇ 신청방법 : 온라인 민원 신청(문체부 누리집) *제출처가 문체부일 경우 해당

ㅇ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20일(문체부 규칙 제4조제2항)

※ 제출처 구분(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부서와 시.도 소관부서)은「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참고

시·도에 위임되지 않은 비영리법인(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제30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2.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 비영리법인은 활동범위와 무관하게 지자체에 위임

ㅇ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 설립 허가 시 주요 검토사항

○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 구비 서류 누락 여부 및 완결성 등을 검토 후 수정·보완 필요 사항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 등), 보완 불능 시 반려

○ 법인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 법인의 명칭, 설립 목적, 사업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

※ 법인의 사업의 일부가 다른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 해당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설립허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공익법인의 경우를 참고,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참고)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구체성, 비영리성***, 실현가능성, 사업의 지속적 유지·증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비영리법인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가 가능하나,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 됨. 즉, '비영리성'의 판단 기준은 수익사업의 적정성 및 구성원에 대한 수익 분배 여부임

** 수익사업의 종류와 방법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며,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사항이 아니나, 정관에 근거 규정이 필요(정관에 수익사업 근거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의 등재가 없는 경우 정관변경을 통해 신설 필요) *관할 세무서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위함

<참고> 법무부 주요 민원사례 (2022 법무부 비영리법인 업무 편람 328p)	
Q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법무부)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당해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목적에 어긋나지 않음. 또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서는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한 수익사업의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음**. 따라서, 본 사안의 법인이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해당 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됨.**

- 임원 결격사유(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 등이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력을 갖추고 있는지, 감사를 두는 경우 법인 업무와 회계에 충분한 지식을 가진 자인지 등 인적 기초 검토

- 법인의 목적과 주된 활동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경우는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함

- 법인의 명칭이 기존 설립 법인과 중복*(동일) 여부 확인

  * 협동조합과 달리 동일명칭이 아닌 유사명칭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음

○ 재정적 기초의 확보 여부

- 출연재산으로부터의 이자 등 운용수익(과실금), 회비 등 재원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

- 출연재산의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져 있고, 부동산의 경우 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한 재산권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 등 물적 기초 검토

-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의 규모, 법인 설립등기 즉시 출연재산을 법인으로 이전 가능한지 검토

-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 방법 등을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 확보 여부 검토

  ※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기본재산을 필수로 요하지는 않음. 다만 설립목적, 사업 성격과 범위, 사업계획서, 재원조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한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기본재산 필요 여부를 소관부서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필요

<참고> 재정 적정성 판단시 기타 고려사항

○출연재산으로부터의 과실금 또는 회비를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총규모와 대비하여 판단
○기본재산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 또는 재산 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임차보증금)으로 구성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되, 부동산등기부상 담보권 설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동산 중 임차보증금은 부동산등기부상 선순위 담보권 설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발생 시기 및 수익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ㅇ 정관 주요 검토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재단법인의 경우 1~5호 사항	1. 목적 2. 명칭(기존 법인과 동일한 명칭 사용 불가)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3. 사무소의 소재지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모두 기재 - 정관상 소재지는 독립한 최소행정구역(시·군·구 등)으로 표시하면 족함 ※ 예시) 주된(분) 사무소는 경기도 ㅇㅇ시에 둔다. * 단, 등기 시에는 소재지의 구체적인 지번까지 등기하여야 함 4.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 방법·회비 등에 관한 것 -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 별지로 기재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정수, 자격, 임기, 선임과 해임 방법 등 * 감사를 둘 수 있으나(민법 제66조), 이사와 달리 임의기관임 ** '이사'는 필수기관(민법 제57조)이나, '이사회'는 임의기관임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사단법인만 해당) * 사원의 자격, 입사, 퇴사, 제명 등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사단법인만 해당)
임의적 기재사항	상기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 정관으로 규정할 사항

- 정관은 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설립자(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정관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전원 인감 간인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확인서와 동일하게 서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본인 서명으로 인감 날인·간인을 대체할 수 있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아래 사항이 정관에 반영되도록 함

  1)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을 규정

  2) 정관상 법인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모두 기재하되, 독립한 최소행정구역(시·군·구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면 족함
  ※ 예시) 주된(분) 사무소는 경기도 ㅇㅇ시에 둔다. (단, 등기 시에는 소재지의 구체적인 지번까지 등기하여야 함)

<참고> : 「2018 상업등기실무」(법원공무원교육원 발행)

⑥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본점은 소송사건 및 비송사건에 있어서 재판관할을 정하고(민소 5①, 비송법 72①), 설립등기 등의 등기의 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된다(법 4), 정관에 기재할 본점의 소재지는 독립한 최소행정구역으로 표시하면 족하고 그 소재지번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상업선례 1-115, 1-137, 2-24). 여기서 독립한 최소행정구역이란 일반적으로는 시 또는 군을 의미한다.

<참고> :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1985.10.30.] [대법원등기예규 제604호, 1985.10.30., 제정]

법인의 사무소(분사무소 포함)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정관에 사무소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그 소재지의 최소 행정구역이 기재되어야 하는바,** 최소 행정구역의 기재가 없는 경우는 물론 막연히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는 것은 정관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표시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등기신청서에 허가서 또는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85. 10. 30. 등기 제50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3)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 규정, 구체적인 사업종목 명시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은 아니나, 관할 세무서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위함

4) 임원의 정수를 정함에 있어 이사 수에 회장 또는 부회장 등이 포함되는지 명시

5) 법인의 임원은 가급적 정수로 규정하되, 범위를 지정할 경우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규정(의결정족수의 모호성 방지 등을 위함)

6) 법인의 목적사업은 종류를 구체성 없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법인 목적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을 방만하게 나열하는 것은 지양

7) 임원의 임기를 무제한으로 하거나, 사원의 퇴사 조건으로 부당한 위약금을 정하는 등 구성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정관 규정은 지양

8)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사장)이 정한다'와 같은 규정은 가급적 지양

※ 사원 또는 임원의 평등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제개혁조치(국무규제 05090-906(1999. 7.6))에 따라

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기준 중 공익성,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요건 삭제

② 민법상 허가취소 사유 이외의 허가취소 사유 삭제

③ 임원 취임승인 등 비영리법인 운영의 자율성 저해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전문개정 (2000. 2. 21.)

④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조항 폐지 (2005. 6. 4.)

□ 설립허가 시에 붙일 조건

○ 설립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문체부 규칙 제4조제3항)

- 단, 이 경우「행정기본법」제17조4항(부관)에 따른 요건에 적합해야 함

※ (참고)허가조건 예시

○ 법인이 아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주무관청은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 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관계 법규 및 정관에 위배되는 법인 활동을 금할 것
-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1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것

□ 법인설립허가 이후 절차

○ 법인설립 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민법 제33조)

○ 주무관청 → 법인 : 허가서 교부(문체부 규칙 제4조제2항)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이나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법인의 경우 설립허가증에 설립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교부

-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서를 받은 법인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① 설립등기: 관할등기소에 등기(3주이내)

②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에 신고

③ 재산이전 : 출연재산 법인명의로 이전

④ 법인등기 완료사실 및 법인에게로 재산이전 완료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규칙 제5조)

ㅇ 설립 등기사항(민법 제49조제2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생년월일을 기재함(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비영리법인은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설립허가 후 주무관청은 다음 사항을 지도·감독함

① 재산이전 및 등기 보고(문체부 규칙 제5조)
② 설립허가 취소 등 제재사항(민법 제37조, 제38조, 문체부 규칙 제9조)
③ 임원 결원 방지(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정수에 따름)

<참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ㅇ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함(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ㅇ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8조)

□ 법인설립허가 후 변경사항의 처리

ㅇ 설립허가 후 아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허가 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허가증을 재발급 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앞면 또는 뒷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함

- 법인의 명칭, 사업내용, 소재지 변경(정관변경허가 신청 필요)

- 허가 조건, 대표자 변경

○ 법인은 아래 사항이 발생할 경우 10일 내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5조)

- 법인설립 등기를 한 경우(민법 제49조), 설립등기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민법 제52조)
- 분사무소 설치 등기를 한 경우(민법 제50조)
- 사무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민법 제51조)

※ (참고) 등기의 효력 :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고(민법 제33조)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됨(민법 제54조)

<참고> 주요 민원사례「종중의 비영리법인 설립 가능 여부」	
Q	문중에서도 재단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절차나 혹 다른 부서의 소관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부서의 소관인지 알고 싶군요. 문화관광부의 소관이라면 저희 문중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중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것은 사당건립등 조상의 유적을 보존 개발하고 장학금지급, 노인경로사업등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A (문체부)	·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그 구성과 조직에 있어 특수단체임을 인정하고 또한 종중재산도 종중원 총유**임을 대법원 판례(대판 93다27703, 1994. 9. 30)로 판시하고 있는 반면, ·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로서 법인 구성원(회원)에게는 법인 정관으로 법인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일정한 자격과 의무 요건이 부여되고 동 여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의에 의한 탈퇴가 가능하고 자격상실 요건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비영리 법인의 재산은 법인소유로 되며, 법인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만 재산처분 및 취득이 가능함 · 위와 같이 **종중은 비영리법인과 개념 및 설립절차, 구성원 자격취득 및 상실요건, 재산소유 관계 등 본질적인 상이점**이 있으며, **위 상이점은 각각 대법원 판례와 민법관련 조항 등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u>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는 불가함</u>**

※ 고유 의미의 종중은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한 비영리법인과는 그 성격을 달리함

2) 정관변경 허가

□ 근거법령

○ 「민법」 제42조, 제45조 및 제46조, 「문체부 규칙」 제6조

※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민법 제42조 제2항 및 제45조제3항)

<참고> 대법원 1985. 8. 20.선고 84누509 판결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정관변경 요건

○ **(사단법인)**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다만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함(민법 제42조1항)

○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설립자(출연자)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정관과 재산을 기초로 운영되고, 사원총회와 같은 자주적 의사결정 기관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됨

1) 재단법인의 정관이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민법 제45조1항)

2)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 → 법인의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음(민법 제45조2항)

3)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음(민법 제46조)

<참고> 정관변경의 의미

정관변경은 법인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정관에 규정된 기존사항을 변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항의 신설이나 기존사항의 폐지, 자구수정이나 보완케 그치는 형식적인 변경도 모두 포함됨(별지 목록 포함)

<참고> 대법원 1996.5.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가.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즉, 인가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내세워 인가 처분을 다툴 수 있을 뿐,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인가 처분을 다툴 수 없음.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를 다퉈야 함)

□ 신청서류

ㅇ 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규칙 제6조)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재단법인)의 회의록 1부.
   ※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에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는 것이 요청됨(민법 제76조)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입과 지출 예산서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ㅇ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민원 신청(문체부 누리집) *제출처가 문체부일 경우 해당

ㅇ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국가유산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10일

ㅇ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 **처분 심사기준**

o 정관변경의 적법성 및 타당성

- 변경의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 민법, 규칙, 정관 등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정관에 따라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확인
-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회의록에 이사의 서명날인 여부
-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o 정관변경으로 법인의 사업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정관변경으로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추가·확대 되는 때에는 이사회 회의록에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 검토 필요

o 경과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 예를 들어 임원의 임기가 변경되는 경우(예: 현행 임기 4년을 3년으로 변경)에 경과규정이 없을 경우 현재 임원의 임기는 개정된 규정의 임기를 적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과규정을 두어 정관개정 당시의 임원에게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정관변경허가가 있는 때에는 변경등기 사항에 대하여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함(민법 제52조), 등기 후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함(규칙 제5조 제2항)

o 정관에 목적을 추가하는 경우 다른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여부

- 추가된 정관목적이 종전의 정관목적과 비교하여 대등한 정도의 목적이라면 다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됨

ㅇ 변경허가 및 변경 후 조치사항

-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법인은 변경등기를 하고 등기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문체부 규칙 제5조2항)

□ 기타 참고사항

ㅇ **(사단법인)** 사단법인의 사무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로 행하되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민법」 제68조),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 전권사항임(「민법」 제42조)

ㅇ **(재단법인)** 재단법인의 경우 그 성질상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45조에 따라 정관변경의 방법을 정관으로 정함(이사회 등에서 의결)

※ <참고> 민법상 관련 규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참고> 법무부 주요 민원사례 (2022 법무부 비영리법인 업무 편람 445p)

Q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신청 사항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A (법무부)	·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이때 주무관청은 '정관 규정'의 변경이 아니라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 허가하여야 함 · 따라서, '허가 대상 정관'에 대하여, 그중 일부 정관 규정을 허가하지 않고 나머지 정관 규정만 반영된 정관을 허가하는 것은, 사실상 '허가 대상 정관'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함.

3) 기본재산처분 허가

□ 근거법령

ㅇ「문체부 규칙」제6조 및 개별법인의 정관규정에 의함.

※ 기본재산 처분과 정관변경의 필요성
-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대체)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 시에는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허가가 필요
- 기본재산 처분 자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은 아니나 기본재산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본재산 변동은 정관의 개정사항이 되어 정관변경 절차가 필요함.
- 따라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대체)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 시에는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허가가 필요함.
-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물론,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 두 경우에는 모두 정관의 변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변경에는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주무부처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임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783 판결)

□ 신청서류

ㅇ 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규칙 제6조)

1. 정관변경허가신청서(문체부 규칙 서식4)
2. 변경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 1부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재단법인)의 회의록 1부.
5. [재산처분시] 처분재산명세서(처분의 사유, 처분재산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 1부
   [재산취득시] 취득재산명세서(취득의 사유, 취득재산목록, 취득의 방법 등을 기재,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을 첨부) 1부

※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에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하는 것이 요청됨(민법 제76조)

ㅇ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민원 신청(문체부 누리집) *제출처가 문체부일 경우 해당

o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국가유산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10일

o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 **처분 심사기준**

o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 재산이 감소되더라도 법인운영에 큰 지장이 없고 법인 목적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인지 검토
- 인건비 등 경상비용 지출과 재산가치가 자연 감소한 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지양

o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재단법인) 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 목적과 부의 안건 등 확인
-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이사회 결의시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서명) 또는 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

o 처분의 구체성

- 재산처분목록과 최근에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을 대조하여 구체적인 내용 확인

o 제3자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의 자격여부

- 법인의 채권자 등, 제3자는 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권한이 없음(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판결)

※ 기본재산의 변경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민법 제52조), 등기 후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함(문체부 규칙 제5조제2항)

4) 잔여재산처분 허가

□ 근거법령

ㅇ「민법」제80조제2항,「문체부 규칙」제11조

- 해산한 법인이 정관으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나, 사단법인의 경우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민법 제80조제2항)

□ 신청서류

ㅇ 아래 서류 첨부(문체부 규칙 제11조)

1.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1부(문체부 규칙 서식5)
2. 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3.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의 회의록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

ㅇ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ㅇ 신청 방법 : 등기 우편 접수

ㅇ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10일

2. 보 고

1) 재산이전 보고

□ 근거법령

ㅇ「문체부 규칙」제5조 제1항

□ 보고사항

재산이전	ㅇ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한 재산목록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
제출서류	ㅇ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제출기한	ㅇ 이전하고 1월 이내

2) 등기사항 보고

□ 근거법령

ㅇ「문체부 규칙」제5조 제2항

□ 보고사항

보고사항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 등의 등기(변경등기 포함) 사항 - 설립등기, 분사무소의 등기, 사무소 이전의 등기, 변경등기
제출서류	등기부 등본 1부
제출기한	등기완료후 10일 이내

※ 민법 제49조~제52조에 따른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 민법 제97조(벌칙) 제1항에 따라 과태료에 처함

3. 신 고

1) 해산신고

□ **근거법령** :「민법」 제86조,「문체부 규칙」 제10조

ㅇ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인 경우는 제외)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 및 제86조에 의거,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완료(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기재)하고 지체없이 법인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해산사유(민법 제77조)**

ㅇ ①존립기간의 만료, ②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③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④파산 또는 ⑤설립허가의 취소

ㅇ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

□ **신고서류(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

ㅇ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서류 첨부(규칙 제10조)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공무원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등본 확인 가능

ㅇ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민원 신청(문체부 누리집) *제출처가 문체부일 경우 해당

ㅇ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2) 청산종결의 신고

□ **근거법령** :「민법」 제94조,「문체부 규칙」 제12조

※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서류**

○ 청산종결신고서(규칙 제12조)

o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o 신청 방법 : 등기 우편 접수

o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4.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근거법령**

○「민법」 제37조,「문체부 규칙」 제8조

※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을 담당(민법 제95조)

□ **행정조치**

○ 법인사무에 대하여 검사.감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를 할 수 있음

사 유	○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자료제출	○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 검사	○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 - 검사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 법인의 이사, 감사가 검사·감독을 방해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후술)

□ 법인 사무 검사·감독 관련 주요 질의사항

<참고1> 법무부 주요 민원사례 (2022 법무부 비영리법인 업무 편람 428p~)	
Q	법인 사무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
A (법무부)	· 감독 대상인 법인의 사무에는 법인의 활용 업무(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 뿐만 아니라, 법인의 재산상황(기본재산 등)에 대한 검사·감독도 포함되며, **주무관청이 법인사무를 검사·감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음** ·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법**인의 활동업무·재산상황 등 법인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독권이 인정**되므로, ①정관변경허가 등 각종 허가신청에 대하여 제반사정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②법인설립허가 취소사유(특히 목적 외 사업 수행이나 영리행위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③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등 **비영리법인 전반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참고2> 법무부 주요 민원사례 (2022 법무부 비영리법인 업무 편람 467p~)	
Q	「ㅁㅁ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권한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A (법무부)	· 「민법」 제37조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무에 대하여 검사·감독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민법」 제38조, 제42조, 제45조 등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정관변경의 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민법」 제38조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 그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설립허가의 취소사유로서 ①목적이외의 사업, ②설립허가 조건의 위반, ③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음 ·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인사, 채용, 업무추진비 집행, 재산임대관리 등 법인의 활동업무 및 재산상황 등의 사무를 집행하는 행위가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하여 검사·감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 학계에서도 주**무관청이 법인사무를 검사·감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감독대상인 법인의 사무에는 법인의 활동업무 뿐만 아니라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감독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임

5. 행정조치

1) 법인설립허가 취소

□ **근거법령** :「민법」제38조,「문체부 규칙」제9조

□ **취소 사유**

ㅇ 목적 외 사업 수행, 설립허가 조건 위반 행위,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 이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취소

1)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참고> 대법원 2014.1.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판시 사항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의 의미 및 사업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란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를 말하고, **이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지는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가 아닌 사업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참고> 대법원 1977.8.23, 선고, 76누145, 판결	
판시 사항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판결 요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존재가 공익을 해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한편 감독관청에 제출할 서류를 기한보다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만으로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하였다 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행위는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 법인 설립당시에는 목적하는 사업이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이후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함

※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에 해당

<참고> 대법원 1982.10.26, 선고, 81누363, 판결	
판시 사항	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나.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판결 요지	가.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나. 원심이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후 그 회장 선거 및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 사이에 불미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것이 원고법인의 기관의 행위이었거나 사원총회의 결의 내용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법인에 설립허가 취소사유 및 해산명령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 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적법히 수긍된다.

□ 절 차

○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코자 하는 경우 청문절차 경유(규칙 제9조)

※ 청문의 절차와 방법은 행정절차법 제27조 내지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20조 참조

○ 취소처분을 한 후에는 관보게재(취소 공고) 및 관할 등기소에 설립허가 취소 알림 공문 시행

※ (관보시스템, 내부망) https://www.gwanbo.go.kr/front/main.do

<참고> 등기선례 제3-981호, 1992.08.31	
질의 요지	우리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 관한 규칙(농림수산부령 제974호;87.6.1.) 제17조 제6호 및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92.2.28. 자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립허가 취소시 민법, 농림수산부령 제974호 및 협회정관에 의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의 등기 등 조치를 이행하고 소정기간내 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음에도 불이행**되어 관련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어, **우리청이나 등기관할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의 등기 등 사단법인 해산에 따른 제반 법적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기 선례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직권이나 주무관청의 촉탁으로 해산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 다만 민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함으로써 그 등기신청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6. 벌　칙(민법 제97조)

□ 벌칙 내용

○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구분	부과 대상	벌칙내용
민법 제97조	① 민법 법인의 장(章)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② 민법 제55조(재산명부와 사원명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③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민법 제76조(총회의 의사록)와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⑥ 민법 제79조(파산신청), 제93조(청산중의 파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위반한 때 ⑦ 민법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 부과권자

○ 민법에서 정하는 사법(私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이 법인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가목, 영 제2조제1항

○ 민사상 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일종의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됨

- 과태료 부과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에 따라 과태료를 받을 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직권으로 과태료 재판을 개시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주무관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법원에 과태료 사항을 통지**할 수 있음

Ⅳ. 공익법인의 세부업무별 안내

ㅇ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되고, 동 법률에 적용을 받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 함.

※ 공익법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이상의 목적사업 이외에는 법인의 목적사업이 공적인 성질을 띠더라도 공익법인이 될 수 없음

※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공익법인등'에는 해당할 수 있음

ㅇ 다만, 여기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함

ㅇ **공익법인 업무도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업무가 그대로 적용됨. 다만 공익법인법상 강화된 설립 요건 및 의무이행 등이 요구되므로 추가적인 점검 필요**

1. 주무관청의 허가

1) 법인설립 허가

□ 근거법령

ㅇ 「민법」 제32조, 「공익법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 「문체부 규칙」

□ **신청서류** :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ㅇ 문체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로 작성(건물명, 호수 포함) ㅇ 사무소 소재지 설립등기(민법 제33조)를 위한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별첨 - 건물사용 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소유권 입증 서류 등
발기인 인적사항	ㅇ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 발기인의 실거주지의 도로명 주소(건물명, 호수 포함) - 약력은 법인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기재 ㅇ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적은 서류 1부
설 립 취지서	ㅇ 설립취지서 1부(임의서식)
정 관	ㅇ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 정관 법정 기재사항(민법 제40조) 누락 여부 확인 - 설립자(발기인)의 기명날인(민법 제40조, 제43조) -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을 정관의 별지로 작성

<table>
<tr><td>재 산
사 항</td><td>ㅇ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 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기부신청서 1부
- ▲(기본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 ▲(보통재산)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
- (재산출연증서*)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후 인감 날인, 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필요시 재산출연증서를 공증받도록 함
ㅇ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1. <기본재산>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
1) 기본재산이 정관 별지로 구성되므로,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 없이 처분 불가
* 기본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기본재산 목록은 정관 별지로 첨부
2)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등
*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제외
3)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용이한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 재산 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및 임차보증금 등)이어야 함
* 권리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정되어 소유권 이전이 용이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은 가급적 지양
4) 기본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방법 및 발생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관련 증빙 첨부

2. <보통재산>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종류, 수량 및 금액 등 기재)
ex) 사단법인의 회비 수익,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수익, 임대수익, 배당소득 등

ㅇ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음</td></tr>
<tr><td></td><td>ㅇ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 (예금, 주식, 채권 등) 예금잔고 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이자·배당 소득 증명서류 등 행정기관·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임대차계약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수익확인서 등
- 기타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및 그 가치를 증명하는 서류 등</td></tr>
<tr><td>사 업
계획등</td><td>ㅇ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u>2개 사업연도분</u>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기본방향, 주요 추진사업, 주요사업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수지예산서의 내용이 담기도록 작성
-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재원을 기재하는 것은 지양
* 보조금, 후원금(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공문이나 기부확약서 등 관련 증빙 확보 권장</td></tr>
<tr><td>임 원
사 항</td><td>ㅇ 임원취임승인신청관련 서류(공익법인법 제5조, 영 제12조)
-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이력서 1부(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 임기 등 포함)
-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td></tr>
</table>

	- 취임승낙서 1부(취임 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 기재,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승낙일자 등을 명시하고 기명날인) -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회의록 사 항	ㅇ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의 의결에 관한 사항 포함 - 발기인 전원 기명하고 인감날인 - 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 인감 간인 - 창립총회 사진, 참석자 서명부, 위임 시 위임장 등 증빙 서류 첨부 ㅇ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ㅇ 공익법인 시행령 제14조
※ 참고	ㅇ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및 서명으로 각종 구비서류의 인감증명서 제출 및 인감날인을 대체**할 수 있음

ㅇ **정관작성** : 아래 사항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 기명날인(공익법인법 제3조,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3조)

정관준칙 (공익법인법 제3조)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모두 기재 - 정관상 소재지는 독립한 최소행정구역(시·군·구 등)으로 표시하면 족함 ※ 예시) 주된(분) 사무소는 경기도 ㅇㅇ시에 둔다. * 단, 등기 시에는 소재지의 구체적인 지번까지 등기하여야 함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 별지로 기재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공익법인법 제13조)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사업에 관한 사항 및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3.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그밖에 기재사항	상기 정관준칙 기재사항 이외에 정관에 기재할 사항 ex)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공익법인법 제4조제3항, 영 제11조) 이사회에 관한 사항(공익법인법 제6조, 제8조제4항)

ㅇ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민원신청(문체부 누리집) *제출처가 문체부일 경우 해당

ㅇ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20일

※ 제출처 구분(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부서와 시.도 소관부서)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참조

시·도에 위임되지 않은 비영리법인(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제30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2.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 비영리법인은 활동범위와 무관하게 지자체에 위임

※ 법인의 사업이 2개 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함(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처분기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공익법인법 시행령 제5조)

목 적 사 업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 정 능력등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 칭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규칙 제4조)

※ 법인의 사업의 일부가 다른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 그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설립허가(공익법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공익법인법 시행령 제6조)

설립 허가시에 붙일 수 있는 조건	1.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 징수 방법, 기타 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설립 허가시에 반드시 붙여야 하는 조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합의하여야 함.(시행령 제6조제2항)

□ 법인설립허가 이후 등기

○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함.(민법 제49조제1항)

○ 설립 등기사항(민법 제49조제2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생년월일을 기재함.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공익법인은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업무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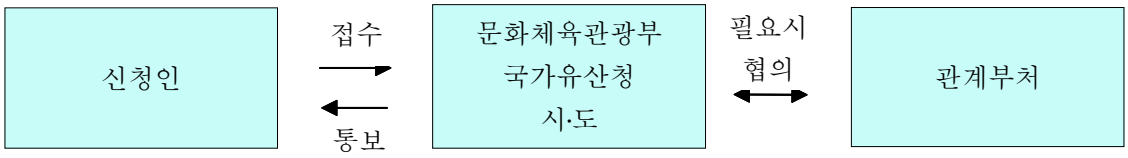

2) 정관변경 허가

□ **근거법령**

○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및 제46조,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0조, 「문체부 규칙」

※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민법 제42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

□ **신청서류**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0조)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재산의 변경은 공익법인법 제11조제3항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사항

※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에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하는 것이 요청됨(민법 제76조)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민원 신청(문체부 누리집) *제출처가 문체부일 경우 해당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국가유산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 **처분 심사기준**

ㅇ 정관변경의 적법성 및 타당성,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경과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등 민법상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심사기준 참고

※ 정관변경허가가 있는 때에는 변경등기사항에 대하여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함(민법 제52조)

3) 기본재산 변동에 따른 허가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법」제11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는 경우
-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음(후술)

> ㅇ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ㅇ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이 경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함)

(1) 기본재산의 처분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법」제11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ㅇ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때 기본재산처분이란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을 뜻함

□ 신청서류

ㅇ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기본재산의 매도.증여. 임대.교환	1.처분재산명세서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함)
기본재산의 담보 제공	1.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피담보채권액(기채액) 3.담보권자 4.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 상환주체/시기/금액/방법, 상환자금조달방법, 상환일정별 상환금액 및 기채의 용도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증빙서류 첨부 5.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부담 .권리포기	용도변경,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 사유서

□ 처분 심사기준

ㅇ 기본재산을 처분한 이후에도 목적사업 달성 가능여부

ㅇ 기본재산을 담보제공시 상환계획 및 상환방법의 적합여부 등

※ 기본재산의 변경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민법 제52조)

□ 업무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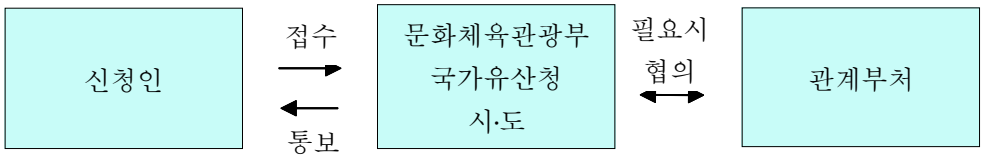

(2) 장기차입 허가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법」제1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공익법인이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 수지를 명확히 하여 해당 연도 내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신청서류

ㅇ 장기차입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1. 장기차입 사유서
2. 장기차입 내역서
   - 장기차입 재산목록
   - 장기차입금
   - 장기차입처
3.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서
4.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처분 심사기준

ㅇ 장기차입계획, 사용계획 및 상환계획의 적합여부

□ 업무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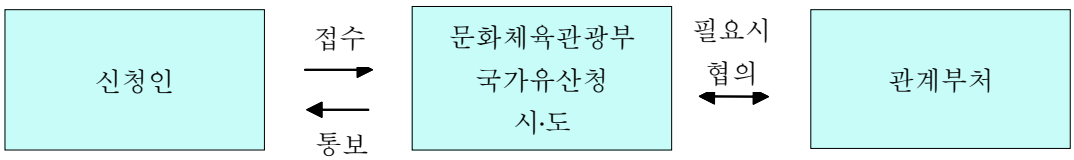

(3)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법」제11조 제3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 **편입사유**

ㅇ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한 경우
2. 기부금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감소한 경우
3. 회비수입이 감소한 경우
4.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영위한 수익사업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보통재산이 고갈된 경우

※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신고로 갈음할 수 있음(후술)

□ **신청서류**

ㅇ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1.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
2.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를 포함한다)
3. 보통재산 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상기 보통재산 편입사유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업무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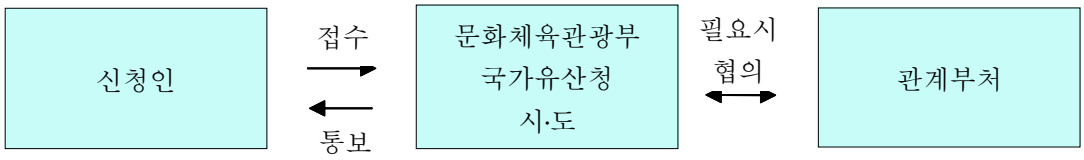

(4) 기본재산의 증가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법」제11조제3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 신청서류

ㅇ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1. 정관변경사유서 2. 정관(신구대비표 포함) 3. 증자재산 목록 및 증빙서류 4. 명의 이전된 증빙서(예금잔액증명서, 등기부등본, 주식소유증명서, 매매계약서 사본 등) 5.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6. 기부증서 사본(기부에 의한 증자시) 7. 인감증명서(부동산,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 업무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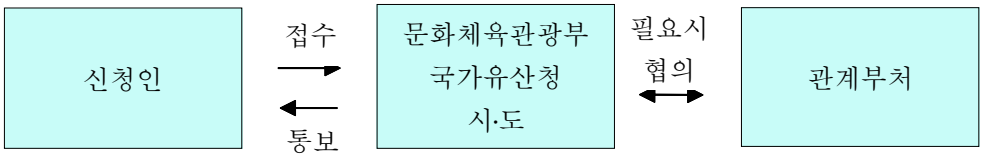

(5) 기부금사용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법」제11조제3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 공인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되어야 하나(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예외적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공익법인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음

□ 신청서류

ㅇ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1.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승인 신청 공문 2. 사유서 3. 기부증서 사본 4. 기부금 사용계획서 5. 재산의 권리증명서 6.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 **업무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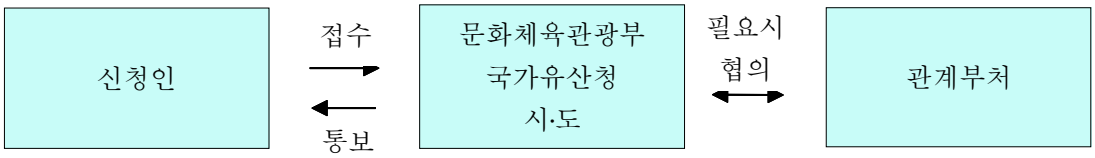

(6)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현재는 폐지)'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음

○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이 경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함)

○ 성실공익법인이 신고함으로써 매도 등을 할 수 있거나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는「상증세법」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 이때 상증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각각 '매도 등을 한 날 또는 편입신고를 한 날의 직전 거래일로부터 이전 2개월'로 봄

○ 기본재산의 매도등을 한 경우에는 그 매도 등을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하며, 같은 시간 내에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함.

□ **신청서류**

1. 기본재산명세서 및 매도 등을 한 재산의 명세서(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포함) 2.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류**

1.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포함)
2. 보통재산 편입 이후 2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총회 또는이사회 회의록 사본
5.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단, 최초 편입인 경우는 제외)
6.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한 성실공익법인은 편입을 한 날부터 3주이내에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함

○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실공익법인은 1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여야 함.

2. 주무관청의 승인

1) 수익사업 승인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법」 제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주무관청의 승인 필요

□ 신청서류

ㅇ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신청 방법 : 등기우편 접수

ㅇ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없음.

ㅇ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 처분 심사기준

ㅇ 당해 수익사업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가 여부

ㅇ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여부

※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함.

2) 법정정수 초과 임원정수 승인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법」제5조제1항

□ **승인사항**

ㅇ 공익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그 수를 증감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 승인 필요

3) 임원취임 승인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법」제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

□ **신청서류**

ㅇ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신청시 불요)
4. 취임승낙서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신청시 불요)
6.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신청시 불요)

※ 임원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 및 민간인신원진술서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의 승인 신청 시에는 이력서, 임원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 민간인신원진술서 및 특수관계부존재각서를 제출하지 않음

ㅇ 신청 방법 : 등기우편 접수

ㅇ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ㅇ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 **처분 심사기준** : 공익법인법 제5조 제3항 내지 제8항, 동법시행령 제12조

ㅇ 임원은 「공익법인법」제5조제6항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여부, 제3항에 의한 임기 제한 준수 여부

ㅇ 이사의 구성은 「공익법인법」 제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1/5을 초과여부, 제4항에 의한 국적 제한 준수 여부

ㅇ 감사는「공익법인법」제5조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와의 특수관계자 여부

※ 임원취임승인이 있는 때에는 3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민법 제52조)

4) 상근임직원정수 승인

□ **근거법령**

ㅇ 「공익법인법」 제5조제9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 **신청서류**

ㅇ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 기구도표
-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

※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 회의록에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는 것이 요청됨(민법 제76조)

ㅇ 신청 방법 : 등기우편 접수

ㅇ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없음.

ㅇ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 **처분 심사기준**

ㅇ 상근임직원의 정수는 업무내용별 업무량과 인건비 등 재원조달방안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

□ **업무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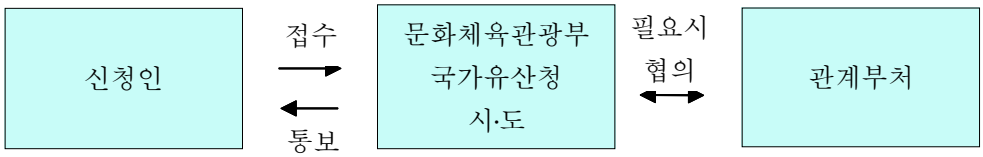

5) 이사회소집 승인

□ **근거법령**

ㅇ 「공익법인법」 제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신청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승인을 받아 소집 가능

□ **신청서류**

ㅇ 이사회소집승인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소집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함.

ㅇ 신청 방법 : 등기우편 접수

ㅇ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부서, 시.도 소관부서
- 처리기간 : 없음.

ㅇ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해당없음.

□ **처분 심사기준**

ㅇ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 손해가 예상되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나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기피 등으로 이사회 소집의 불가능성 여부

ㅇ 재적이사 과반수 찬동 등 제반 절차 준수 여부

□ **업무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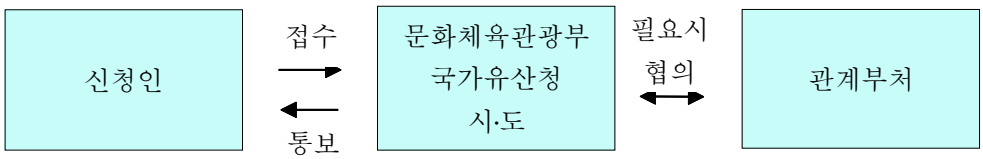

6) 기부금 사용 승인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2호

-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되어야 함
- 단, 예외적으로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기본재산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공익법인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음

□ **신청서류**

ㅇ 기본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의 사용 승인 신청 공문에 아래 서류 첨부

1. 사유서
2. 기부증서 사본
3. 기부금 사용계획서
4. 재산의 권리증명서
5.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3. 보 고

1) 재산이전 보고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법 시행령」제8조

□ 보고사항

재 산 이 전	공익법인(재단법인에 한함)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
제 출 서 류	- 재산이전보고서 - 그 이전을 증명하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이 경우 주무관청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 확인 가능
제 출 기 한	이전하고 3개월 내

2) 등기사항 보고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법」시행령 제9조

□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 등의 등기(변경등기 포함)사항 - 설립등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사무소 이전의 등기, 변경등기
제 출 서 류	- 등기보고서 ※ 이 경우 주무관청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가능
제 출 기 한	등기완료후 7일 이내

3) 사업계획 등의 보고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법」 제1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 보고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	1. 제출시기 :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2. 제출자료 .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 .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사업실적 및 결산	1. 제출시기 :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 2. 제출자료 . 당해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 .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함) .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자료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

4. 신 고

1) 해산등기 신고

※ 비영리법인 세부업무별 설명에 준함

2) 청산종결등기의 신고

※ 비영리법인 세부업무별 설명에 준함

3) 기본재산 처분 신고(성실공익법인)

□ 근거법령

○ 「공익법인법」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

□ 신고사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 신고서류

○ 신고서에 다음 서류 첨부

제 출 서 류	1. 기본재산명세서 및 매도등을 한 재산의 명세서(시행령 제18조의3 제2항에 따른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포함한다) 2.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 출 기 한	매도·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을 한 날부터 3주일 이내

□ 업무처리

○ 신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서류 검토

○ 필요시 공익법인에게 보정 요구(공익법인은 1주일 이내 보정해야 함)

□ **추가 안내사항**

ㅇ 기본재산의 매도,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을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기본재산의 변동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해야함

4)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신고

□ **근거법령**

ㅇ 「공익법인법」 제1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

□ **신고사유**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단,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함.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한 경우
2. 기부금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감소한 경우
3. 회비수입이 감소한 경우
4.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보통재산이 고갈된 경우

□ **신고서류**

ㅇ 신고서에 다음 서류 첨부

제 출 서 류	1.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제2항에 따른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포함한다) 2. 보통재산 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다만, 최초 편입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업무처리**

ㅇ 신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서류 검토

ㅇ 필요시 공익법인에게 보정 요구(공익법인은 1주일 이내 보정해야 함)

□ **추가 안내사항**

ㅇ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한 성실공익법인은 편입을 한 날부터 3주일 이내 주무관청에 기본재산의 변동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함

5. 주무관청의 감사추천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법」제5조제8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감사 2인중 1인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추천 가능

□ **추천절차(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3조)**

ㅇ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

ㅇ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추천자중에서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감사 1인을 추천 가능

※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추천

ㅇ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종전에 그 법인의 감사 중 1인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사 1인을 추천 가능

※ 이 경우 감사 중 이사회에서 지명한 자 1인은 주무관청에서 추천한 감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있은 날의 전일에 퇴직한 것으로 봄.

6. 법인업무의 검사·감독 등

1) 법인업무의 검사.감독

□ 근거법령

○「민법」 제37조,「공익법인법」 제14조 및 제17조,「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7조

□ 행정조치

○ 법인사무에 대하여 검사.감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를 할 수 있음

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자 료 제 출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
업 무 검 사	감독권이 있는 행정관청의 소속공무원이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함 * 감사공무원은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하고 제시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3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와 별도로 회계감사를 받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로 위 감사를 갈음할 수 있다. * 위 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은 감사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행정조치

1) 법인설립허가 취소

□ 근거법령

○「민법」 제38조,「공익법인법」 제16조

□ **취소 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이상의 사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 **절차**(공익법인법 제16조의 2)

○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코자 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 청문의 절차와 방법은「행정절차법」제27조 내지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20조 참고

2)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 **근거법령**

○「공익법인법」제14조 제2항

□ **취소 사유**

1.『공익법인법』또는 동법 시행령이나 정관 위반시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손,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를 생기게 할 때
3.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할 때

□ **절차**

○ 취소사유 발생 → 주무관청 시정요구 → 요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취임승인 취소

3) 수익사업에 대한 시정 또는 정지명령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법」제14조제3항

□ **시정.정지 명령 사유**

ㅇ 수익을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

ㅇ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 된다고 인정될 때

4) 보통재산의 기본재산 편입조치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법」시행령 제16조 제3항

-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 그 재산의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음

8. 벌 칙

□ **근거법령**

ㅇ「공익법인법」제19조

□ **벌칙 내용**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승인없는 수익사업을 하거나 승인내용을 변경하여 수익사업을 한 경우
   - 허가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한 경우
   - 허가 없이 허가대상 금액 이상의 장기차입을 한 경우
   - 허가 없이 허가대상인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을 한 경우
   - 신고대상인 기본재산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및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을 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지도 않고,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도 않은 경우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익사업 시정 또는 정지명령 위반
   - 사업계획·예산 및 사업실적·결산의 미제출, 미보고 및 허위제출, 허위보고
   - 주무관청 감사를 거부, 기피
   - 감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수행 거부 또는 직무유기
3. 이사 또는 감사가 상기 1,2의 죄를 범했을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처함.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Ⅴ. 법인의 세제적격단체 신청 등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청 및 보고 관련 기관이 주무관청→국세청으로 이관)

ㅇ 세법상 공익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마, 바목에 따른 법인(제9호)
  *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제10호)

□ 세제적격단체

ㅇ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 할 수 있도록 기재부로부터 지정된 법인을 말함.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공익법인'('21.1월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공익법인'으로 명칭변경)으로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에 대한 손비 처리 가능

ㅇ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포함)에 지정 신청

< 추천 및 지정 절차 흐름 >

비영리 법인 등	**추천신청** ⇒ 신청서류 제출 **(해당 분기말의 전전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추천** ⇒ **(해당 분기말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	**지정** ⇒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 고시)**	**전자관보**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Ⅵ. 주요 민원 사례(2022 법무부 비영리법인 업무 편람)

□ 재단법인의 통합(합병) 가능 여부

Q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장학회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학술연구재단을 통합함에 있어 다음 3가지 방안 중 현행 법체계상 적법한 것은 무엇인가? ①소멸예정법인을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밟은 후 재산을 존속법인에 양도하는 방안 ②학교법인이나 회사법인의 경우를 준용하여 합병에 의하여 통합하는 방안 ③소멸예정법인의 재산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증여한 후 소멸예정법인의 해산절차를 밟는 방안
A (법무부)	합병에 의한 방법은 법률상 전혀 불가능하고 소멸예정법인의 해산 및 청산 후 존속법인에의 잔여재산 양도방법은 잔여재산의 귀속권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현행법상 그 목적실현이 보장되는 방안이라 할 수 없고, 결국 증여 후 해산하는 "③"의 방안만이 적법하다 할 것임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수익사업 승인에 관한 질의

Q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수익사업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법무부)	공익법인법 제11조는 기본재산을 임대 등 처분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 제3항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려면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와 수익사업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할 것임

□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수익사업 승인'의 관계

Q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수익사업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A (법무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 등 처분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 제3항은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각각의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함.

□ 의결정족수에 관한 질의

Q	ㅇㅇ법인은 이사의 정수는 10인, 재적이사는 5인으로 정관상 의결정족수가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규정되어 있어 의결이 불가능할 때 처리방법은?
A (법무부)	이사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이사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동 법인은 이사의 정원이 부족하여 결의가 불가능함.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후,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의결하여야 할 것임

□ 임원의 수에 대한 질의

Q	공익법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법인에는 5인이상 15인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무관청이 승인할 수 있는 이사와 감사의 수 한계 여부
A (법무부)	공익법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만 얻는다면 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주무관청이 승인시 이사 및 감사의 수를 적당한 범위 내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방하다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 관련(1)

Q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본재산을 감축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A (법무부)	보통재산으로 조세를 부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공익법인법상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사용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정금액을 장기차입하여야 하는 방법만이 규정되어 있음(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8조). 이 경우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야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 관련(2)

Q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장기차입할 수 있는지 여부
A (법무부)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충당하여야 함. 법인이 장기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공익법인의 이사 관련

Q	공익법인의 이사가 5인인 경우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1인이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A (법무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은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5인의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경우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1인만이 이사로 활동할 수 있을 것임.

□ 기본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Q	사단법인의 해산으로 주무관청에 귀속된 재산을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이 증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본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A (법무부)	기본재산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 확보를 조건으로 설립허가를 할 수 없고, 사단법인 해산으로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재산에 향후 동일 목적으로 갖고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증여한다는 필수적 조건을 부가할 수도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법인 설립

Q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연한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법무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열거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적용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공익법인을 예정하여 둔 것으로 볼 수 있음.

□ 주무관청의 예규를 위반한 법인의 처리

Q	법인이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의 수지예산서,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재산목록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리문제
A (법무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 법인의 임원자체가 공중분해 되어 모일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설립허가의 취소가 가능함.

□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에로의 전환

Q	이미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
A (법무부)	주무관청은 기존의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기존의 설립허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익법인으로의 전환을 허가할 수 있을 것임. 현재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단법인의 목적이 동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동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비영리법인의 주식회사 설립·운영

Q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법무부)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당해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목적에 어긋나지 않음. 또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한 수익사업의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음. 따라서, 본 사안의 법인이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해당 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됨.

□ 공익법인 이사의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Q	공익법인의 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A (법무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고 규정함. 따라서 이사 본인이 직접 서면결의를 하는 것도 금지하는 취지를 비추어 보면, 이사 대리인의 선임을 통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결의하는 것은 더욱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 한 표결권의 행사

Q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가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A (법무부)	임의기관인 「민법」상 법인 이사회의 의결에 대해서 법률상 필수기관인 주식회사의 이사회나 공익법인 이사회의 의결과 같이 엄격히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따라서 이사회 의사(議事)의 대리의결은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사단법인의 사원 결의권

Q	민법 제73조의 사원의 결의권과 관련하여 ① 각 사원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1개의 결의권을 가지는지 여부, ② 법인의 정관에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법무부)	민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결의권을 가짐. 그러나 이 사원결의권 평등 원칙은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음(동조 제3항).

□ 비영리재단법인의 상법상 회사로의 변경

Q	비영리재단법인을 상법상 유한회사·주식회사로 전환하거나 상법상 회사와 합병할 수 있는지 여부
A (법무부)	현재 법인의 합병제도는 「상법」상 회사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합병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 또한 비영리법인이 회사로 전환되거나 합병하는 것은 현행 민법상 불가능함.

□ 재단법인의 분할

Q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법인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A (법무부)	「민법」에는 법인의 합병, 분할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함.

□ 사단법인의 설립발기인

Q	법인이 사단법인의 설립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A (법무부)	사단법인에 있어서 사원은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법인도 사단법인의 설립발기인이나 설립 후 사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이사 또는 이사장의 자격

Q	법인이 다른 법인의 이사, 이사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A (법무부)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업무집행을 하거나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하고, 대표이사가 되기 위한 전제에 있는 자들이므로 자연인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임

□ 임원의 임기개시일

Q	비영리재단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 후 관할관청의 취임승인을 신청한 경우, 관할관청에서는 임원의 임기개시일을 이사회 의결일로 소급하여 승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할청의 승인을 얻은 날인지의 여부
A (법무부)	임원선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 그 임기개시일은 승인을 얻은 날부터라고 할 수 있음(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432 판결 참조).

□ 재적이사의 기준

Q	법인정관에 기재되어 등기된 이사 수와 현재 이사 수가 다를 경우, 이사회 의결 시의 재적이사 수는 어느 것이 기준인지 여부
A (법무부)	재적이사 수는 정관상의 이사 수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흠결이 있을 경우, 해당 결의는 절차상 흠결로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음.

□ 사단법인을 탈퇴한 등기이사의 지위

Q	비영리사단법인의 등기이사로 있던 중, 해당 법인을 탈퇴할 경우 등기이사직도 당연 소멸되는지의 여부
A (법무부)	사단법인의 이사는 「민법」상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므로, 사원이 아니어도 이사직은 담임할 수 있음. 만약 해당 법인의 정관에서 사원만이 이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원의 탈퇴로서 이사직위도 같이 해소될 것이지만,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원탈퇴와 이사직의 해소 문제는 별개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이사와 감사의 겸직

Q	감사가 이사를 겸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정관의 타당성
A (법무부)	민법에는 감사와 이사의 겸직금지 규정은 없으나, 주무관청은 이사·감사 겸직의 정관을 이유로 설립을 불허하거나 정관시정을 조건으로 설립허가할 수 있음.

※ 단, 법인의 재산상황 및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감사의 직무 성질상 이사와 감사는 겸임할 수 없거나, 겸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통념임

□ 총회 의사정족수의 완화

Q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변경으로 총회 의사정족수를 완화하는 것이 위법 또는 무효인지, 주무관청 직권으로 정관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A (법무부)	총회 의사정족수를 완화하는 정관변경이 위법 또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주무관청이 직권으로 정관을 변경할 사항은 아님.

□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한 기본재산의 사용·처분

Q	비영리재단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임의로 기본재산을 사용·처분 하였을 경우 주무관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A (법무부)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처분사실은 정관 변경 사항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아 주무관청은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민법 제97조 제4호).

□ 분사무소의 설치

Q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허가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경상남도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정관변경 인가 승인을 받지 않고 경상남 도에서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 (법무부)	사회복지법인 정관 제3조 제2항에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분사무소 위치 등에 대한 정관 규정이 없으므로 경상남도 분사무소 설치 및 활동이 정관 위반도 아니고, 이 때 정관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본건 사회복지법인은 경상남도 관내 사업인 본건 장애인재활직업사업을 수행할 권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 주무관청의 변경

Q	주 목적사업의 변경으로 주무관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A (법무부)	공익법인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데, 주된 사무를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이 되므로, 결국 정관 변경으로 주된 사무가 변경되는 경우 주무관청도 변경될 수 있음.

【 별첨 】

법인 업무 서식 및 작성예시

※ 규칙 별지 양식(제1호~제6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양식 외에는 예시 양식임

□ 법인 설립 관련 서식

1-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
1-2. 설립취지서
1-3. 발기인 명단
1-4. 재산목록
1-5. 사업계획서
1-6. 임원조서(취임승락서 포함)
1-7. (공익법인)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1-8. 법인 발기인 회의록
1-9. 출연자 확인서(재산기증승낙서 포함)
1-10. 법인 설립허가증(규칙 별지 제2호)

□ 법인 정관변경 관련 서식

2-1. 정관변경허가 신청서(규칙 별지 제3호)
2-2. 정관변경사유서
2-3. 정관변경 신·구 대비표
2-4. 법인변경 사항 보고

□ 법인 보고사항 등 관련 서식

3-1. 사업계획 총괄표
3-2. 예산총괄표
3-3. 세입(세출)예산서
3-4. 추정대차대조표
3-5. 추정손익계산서
3-6. 세부사업계획

4-1. 사업실적 총괄표
4-2. 결산총괄표
4-3. 세입(세출)결산서
4-4. 대차대조표
4-5. 손익계산서
4-6. 재산현황
4-7. 보통재산현황
4-8.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4-9. 세부사업실적

□ 법인 점검 관련 서식

5-1. 법인 점검표

□ 법인 해산 관련 서식

6-1. 법인 해산신고서(규칙 별지 제4호)
6-2. 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6-3.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5호)
6-4. 청산종결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

□ 공문 작성 예시

【서식 1-1】(규칙 별지 제1호) <개정 2015.7.16.>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유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1.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2.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4.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5.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시·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1-2】(예시)

설 립 취 지 서

사단법인/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 (날인 또는 서명)

주) 설립취지서는 법인설립의 허가에 있어서 허가권자의 공익사업 여부 판단의 주요자료가 됨에 유의

【서식 1-3】(예시)

발 기 인 명 단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주요약력(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려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홍길동 (洪吉童)	00.00.00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02)1234-5678
	ㅇ(전) ㅇ(현)		

작성자 : 사단법인 ㅇㅇㅇㅇ발기인대표 ㅇㅇㅇ(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ㅇㅇㅇㅇ출연자 ㅇㅇㅇ(날인 또는 서명)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서식 1-4】(예시)

재 산 목 록

구 분	재 산 명	수 량	금 액(원)	비 고
기본재산				
보통재산				
합 계				

년 월 일

위 사실을 확인함

작성자 : 사단법인 ㅇㅇㅇㅇ발기인대표 ㅇㅇㅇ(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ㅇㅇㅇㅇ출연자 ㅇㅇㅇ(날인 또는 서명)

기 본 재 산

재산명	수 량	소재지	평가액(원)	취득원인	비 고
현금	계좌				
주식	주				
채권					
[동산소계]					
건물	㎡				
전(田)	㎡				
답(沓)	㎡				
대(垈)	㎡				
임야(林野)	㎡				
기타					
[부동산소계]					
기타					
[소계]					
합 계					

보 통 재 산

구 분	품 명	수 량	단가(원)	금 액(원)	비 고
현금					
장 비	컴퓨터 노트북 단말기 업무용차량 휴대폰	대			
기타					
합 계					

【서식 1-5】(예시) 사업계획서

Ⅰ. 법인현황

1. 사업개시 예정표

1) 사업개시 예정일 :

2) 사업개시 준비기간 :

3) 운영조직 계획표(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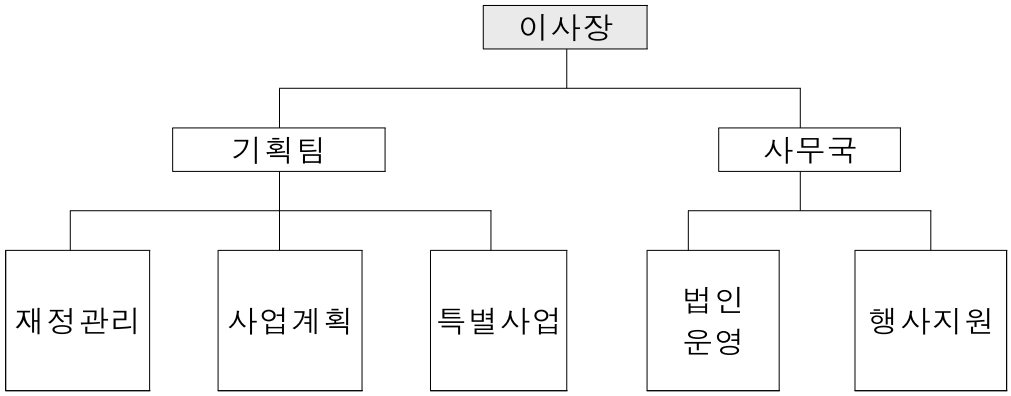

2. 상근직원

직위	성명	담당사무	학,경력	비고
계	○명			

3. 회원관리계획

구분	인 원(명)	회비수준(원)	회원자격
특별회원 일반회원			
계			

4. 건물, 대지 및 임대

구 분	소재지(지번, 지목)	수 량 (㎡)	단가 (원)	금액 (원)
건 물 대 지 임 대				
계				

5. 장 비

구 분	장 비 내 역	수 량	단 가 (원)	금 액 (원)
사무용	컴퓨터 복사기 등			
기 타	업무용차량 등			
합 계				

6. 시 설

시 설 내 역	면적(㎡)	수 량	평가금액 (원)
사 무 실 교 육 실 쉼 터 진 료 실 등			
합 계			

7. 세입세출 예산서

가. 세　입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05)	산 출 기 초	비 고
관	항	목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대가료			
잡수익	기부금 수입	기부금			
.	.	.			
.	.	.			
.	.	.			
.	.	.			
세입합계					

나. 세　출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05)	산 출 기 초	비 고
관	항	목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대가료			
경상비	인건비	임 금			
.	.	.			
.	.	.			
.	.	.			
.	.	.			
세출합계					

8. 기타 법인 운영 관련 사항

- 법인의 운영 관련사항 구체적 요약 작성

Ⅱ. 세부사업계획

1. 주요사업 목표 :

2. (제1사업명)

가. 목적 :

나. 사업내용

(1) 시행시기 :

(2) 장소 :

(3) 사업내용 :

다. 소요예산

(1) 인건비 :

(2) 운영비 :

(3) 기타 :

라. 기타사항 :

마. 향후계획 :

3. (제2사업명)

【서식 1-6】 임원조서(취임승낙서 포함)(예시)

임 원 조 서

번호	직위	성명(한자)	생년월일	임기	주 소	현직
	주요약력					
1	이사장	홍길동 (洪吉童)	00.00.00	4년		교수
	ㅇ(전) ㅇ(현)					
2						
3						

작성자 : 사단법인 ㅇㅇㅇㅇ발기인대표 ㅇㅇㅇ(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ㅇㅇㅇㅇ출연자 ㅇㅇㅇ(날인 또는 서명)

임 원 취 임 승 낙 서

사단(재단)법인 ○○○○ 설립자 대표

○○○ 귀하

본인은 금번 설립코자 하는 사단(재단)법인 ○○○○의 회장(이사장)/이사/감사에 취임하여 그 직을 맡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ㅇㅇㅇ(날인 또는 서명)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가칭)사단/재단법인 ○○○귀중

【서식 1-7】(공익법인)특수관계 부존재 각서(예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본인은 법인임원간에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해당됨이 발견될 때에는 임원취임 승인취소 등 행정조치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으로 이에 각서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ㅇㅇㅇㅇ

회장(이사) 홍길동(인)
이사 갑을병(인)
이사 (인)
이사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유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1-8】(예시)

"사단법인 ○○발기인 회의록" (예시)

1. 일　　시 :　　년　　월　　일

2. 장　　소 :

3. 출석위원 : ○○○, ○○○, ○○○, ○○○, ○○○, ...(성명기재)

4. 결석위원 : ○○○, ○○○, ○○○, ...(성명기재)

5. 안　　건

- 제1호 의안 : 설립취지선택(안)
- 제2호 의안 : ○○법인 명칭제정(안)
- 제3호 의안 : 정관(안)
- 제4호 의안 : 임원선임(안)
- 제5호 의안 : 법인사업계획서(안)
- 기타 안건(있을시 상정)

6. 회의내용

발 언 자		회　의　진　행　사　항
사회자	* * *	발기인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대회를 이끌어갈 임시의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임시의장을 맡으시면 좋으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기인(A)	* * *	* *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발기인(B)	* * *	재청입니다.
발기인(C)	* * *	삼청입니다.
사회자	* * *	이의 없습니까?
발기인	(전원)	(이의없음을 표명하다)
사회자	* * *	그럼, * * *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임시의장	* * *	부족한 제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으로 ○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제1호 의안인 설립취지문 선택이 있겠습니다 간사 000님께서는 본 법인 설립취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언 자		회 의 진 행 사 항
간사	0 0 0	(설립취지문 낭독)
임시의장	* * *	간사 000 낭독하신 대로 본 법인은 .....
		하고자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2호 의안인 법인명칭 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좋은 명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기인(D)	* * *	본 법인의 명칭은 ... 뜻을 살리고 하는 뜻에서 사단법인 ○○○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발기인(A)	* * *	재청입니다.
발기인(F)	* * *	삼청입니다.
임시의장	* * *	본 법인의 명칭을 사단법인 ○○○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
발기인	(전원)	(이의없음을 표명하다)
임시의장	* * *	그럼,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 의안인 정관(안)심의가 있겠습니다.
		간사 000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0 0 0	(유인물에 의거 정관안 제안 설명)
임시의장	* * *	간사 000의 정관(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정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기인(E)	* * *	제5조의 ....는 .....으로 하는 것이 더....
발기인(B)	* * *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법인의 취지를 .... 좋을 듯 싶습니다.
임시의장	* * *	그러면 정관 제5조의 ...는 ...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발기인	(전원)	(이의없음을 표명함)
임시의장	* * *	정관 제5조는 ...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나 질의 없으신지요 ?
		없으시면 정관(안)은 수정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호 의안인 임원선임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법인의 이사장을 선출한 뒤 이사와 감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발기인(C)	* * *	본 법인의 이사장으로 * * *을 추천합니다.
발기인(A)	* * *	재청입니다.
발기인(B)	* * *	삼청입니다.
발기인	(전원)	(* * *을 이사장으로 선출함을 동의함)
이사장	* * *	(인사말씀)
		이어 이사와 감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사와 감사 선임 및 임기결정)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진행하여 나머지(안) 처리

위와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함.

년 월 일

발기인 대 표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서식 1-9】(예시)

출연자 확인서 (재단법인)

본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규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을 확인한다.

1. 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으로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에 둔다.
4. 자산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위 법인에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으로 금 ○○○원을, 보통재산으로 금○○○원을 무상으로 출연한다.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가. 임원은 이사 ○○인과 감사 ○인을 둔다.
   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한다.(생략 가능)
   다. 이사의 임기는 ○년, 감사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6. 기타의 사항 : 별첨 정관과 같다.

년 월 일

출연자 ○○○ (인)

귀하

주) 1. 출연자 날인과 별첨 정관 간인은 출연증서에 첨부된 인감(인감증명서상의 등록된 도장)으로 날인한다.
2. 출연자가 2인이상일 경우 : 「4. 자산에 관한 사항」에서 도표(출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출연금액, 비고 등)으로 표시하고, 하단에 출연자 연명으로 날인, 출연자 전체가 별첨 정관에 간인한다.
3. 출연자가 상사법인일 경우 : 출연자 도장은 상사법인 등기부(대표자 확인), 대표자 인감 증명서,법인 잔고증명 첨부, 등록인감으로 출연자 확인 및 별첨 정관에 간인한다.

기 본 재 산 기 증 승 낙 서

1. 재산의 표시

연 번	종 류	규 모 (㎡)	가 액 (원)	연간수입액 (원)	소재지	등기번호	비 고
1	토 지						
2	건 물						
3	예 금						
4	유가증권						

2. 위 재산은 증빙서류와 같이 본인소유의 재산인 바, (가칭)사단/재단법인 ○○○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성하여 위 재산을 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인감증명서 첨부, 정히 기증함을 승낙함

20 . . .

위 재산 소유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감날인 또는 서명)

첨부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원평가서(부동산출연시)각 1부
3. 은행잔고 증명서(현금 출연시) 1부

(가칭)사단/재단법인 ○○○귀중

보 통 재 산 기 증 승 낙 서

1. 재산의 표시

연 번	종 류	단 위	가 액	수 량	비 고

2. 위 재산은 아래 본인소유의 재산인 바, (가칭)사단/재단법인 ○○○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성하여 위 재산을 귀 법인의 보통재산으로 인감증명서 첨부, 정히 기증함을 승낙함

20 . . .

위 재산 소유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감)

첨부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가칭)사단/재단법인 ○○○ 귀중

【서식 1-10】(규칙 별지 제2호) <개정 2014.6.19>

(앞쪽)

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o 성 명:
   o 생년월일:
   o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유산청장
ㅇㅇ시·도지사 인

210㎜×297㎜[백상지 120g/㎡]

(뒤쪽)

준수사항

1.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주무관청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사항 >

변경일	내 용	확 인

【서식 2-1】(규칙 별지 제3호) <개정 2014.6.19>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제46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유산청장
ㅇㅇ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시·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2】(예시)

정관변경사유서(예시)

1. 사단(재단) 법인 ㅇㅇ에서 사단(재단)법인 ㅁㅁ로 명칭 변경
2. ㅇㅇ에서 ㅁㅁ으로 사단(재단)법인의 목적 변경
3. ㅇㅇ에서 ㅁㅁ으로 사단(재단)법인의 출자방법 변경
4. ㅇㅇ에섬 ㅁㅁ으로 사단(재단)법인의 자산총액 변경

위와 같은 사유로 20ㅇㅇ년 ㅇ월 ㅇㅇ일 (사원총회,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20ㅇㅇ년 ㅇ월 ㅇㅇ일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ㅇㅇ시, ㅇㅇ도)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유산청장 귀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서식 2-3】(예시)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임원) (생략) 1. (생략) 2. (생략) 3. 이사 : 9명(회장, 부회장 포함) 4. (생략)	제10조(임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이사 : 15명(회장, 부회장 포함) 4. (현행과 같음)
제15조(고문의 위촉) 1. 본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생략) 3. (생략) 〈신설〉 〈신설〉	제15조(고문 및 운영위원의 위촉) 1. 본회에 약간명의 고문 및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운영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회장이 요청한 회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5. 고문 및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사무부서)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 약간인을 둔다. 3.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을 정한다.	제16조(사무부서)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 약간인을 둔다. 3. 사무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운영규정을 정한다.

【서식 2-4】(예시)

법인변경 사항보고

법 인 일반개요	법인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정관변경 현 황	변 경 전	변 경 후

소 재 지 변경현황	변 경 전	변 경 후

재 산 변 동 현 황	구 분	증 가 전	증 가 후
	계		
	기본재산		
	보통재산		

임원변경 현 황	구 분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 기	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서식 3-1】(예시)

○○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 법인명 : 법인 ○○○○ (설립일 : . .)

2. 일반현황

이사장		사무소 소재지			전 화	
					팩 스	
임원정수	이사 : 명 감사 : 명	임원현원	이사 : 명 감사 : 명	상 근 임직원수	임 원	명
					직 원	명
기본재산			보통재산			

3.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예 산 액	구 분		예 산 액
①출연금			① 경상비 (법인운영)	인건비	
				운영비	
	소 계			소 계	
② 목적사업 수입금			② 퇴직적립금		
③ 과실소득			③ 법 인 세		
④기타수입			④ 목적사업비		
	소 계			소 계	
			⑤ 기본재산 편입액		
⑤ 전기이월액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⑥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이월잉여금		⑦예비비		
	기 타				
	소 계				
⑥ 법인세 환급액				소 계	
합 계			합 계		

사업계획 총괄표 등 작성요령

1. 사업계획 총괄표 작성

□ 일반현황

○ 임원정수 : 정관상 임원의 정수 기재

○ 임원현원 : 현재 임기중에 있는 임원수 기재

□ 예산현황

[수 입]

① 출연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 기재

③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될 과실금액 기재

④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할 수입 중 위①~③을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⑤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⑥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지 출]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 임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상근 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예정)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될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업별로 기재하되, 직접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금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 편입 예정액 기재

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⑦ 예비비 : ① ~ ⑥ 항의 지출항목을 제외한 잉여금 기재

2. 추정대차대조표(3-4) 및 추정손익계산서(3-5) 작성

ㅇ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

ㅇ 반드시 전기(직전년도)와 당기(당해년도)로 대비하여 작성

ㅇ 사업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

ㅇ 추정손익계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당기순이익, 당기결손금 등)이 당해연도 수입금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서식 3-2】(예시)

예 산 총 괄 표

법인명 :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과 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 교 증(△)감 (A-B)	구성 비율 (A/C)	과 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 교 증(△)감 (A-B)	구성 비율 (A/C)
계	(C)				계	(C)			

【서식 3-3】(예시)

세입(세출)예산서

법인명 :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감	산 출 기 초
관	항	목				

☞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예산액을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전년도 예산액을 기정예산액으로 수정하여 작성한다.

【서식 3-4】(예시)

추 정 대 차 대 조 표

법인명 :

(단위 : 천원)

자	산		부 채 및 자 본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서식 3-5】(예시)

추 정 손 익 계 산 서

법인명 :

(단위 : 천원)

비	용		수	익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서식 3-6】(예시)

세 부 사 업 계 획

일시(기간)	장소	참여(수혜인원)	사업예산(원)	사업내용

【서식 4-1】(예시)

○○년도 사업실적 총괄표

1. 법인명 : 법인 ○○○○ (설립일 : . .)

2. 일반현황

이사장		사무소 소재지			전 화	
					팩 스	
임원정수	이사 : 명 감사 : 명	임원현원	이사 : 명 감사 : 명	상 근 임직원수	임 원	명
					직 원	명
기본재산			보통재산			

3. 결산현황

(금액단위 : 원)

수 입			지 출		
구 분		결 산 액	구 분		결 산 액
① 출연금			① 경상비 (법인운영)	인건비	
				운영비	
	소 계			소 계	
			② 퇴직적립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③ 법 인 세		
③ 과실소득			④ 목적사업비		
④기타수입					
				소 계	
	소 계		⑤ 기본재산 편입액		
⑤ 전기이월액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00년도 원 '00년도 원 계 원	⑥ 차기이월액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전 기 (전년도)	
				당 기 (당 해년도)	
	이월잉여금			이월잉여금	
	기 타			기타	
	소 계				
⑥ 법인세 환급액				소 계	
합 계			합 계		

사업실적 총괄표 등 작성요령

1. 사업실적 총괄표 작성

□ 일반현황

○ 임원정수 : 정관상 임원수 기재

○ 임원현원 : 현재 임기중에 있는 임원수 기재

○ 상근임직원 : 상근 임직원수 기재

□ 결산현황

[수 입]

① 출연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 기재

③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된 과실금액 기재

④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할 수입 중 위①~③을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⑤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각 연도별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액을 연도별로 구분 기재

(예) '00년도 : 223,230원, '01년도 : 241,000원, '02년도 : 324,230원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⑥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지 출]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상근 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된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금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과 기타 사유(증여, 기부, 보통재산 등)로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 기재

⑥ 차기이월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전기"란에는 직전년도까지의 지급준비금 총액 중 미사용 합계를 기재하고, "당기"란에는 당해연도에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잉여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이월잉여금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작성

□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

□ 반드시 전기(직전년도)와 당기(당해년도)로 대비하여 작성

□ 사업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

□ 손익계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당기순이익, 당기결손금 등)이 당해연도 수입금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3. 사업비 지급명세서 작성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내역	집 행 액	산출기초	비 고
			000,000원×0회 000,000원×0명×회	
	⋮		000,000원×0회	
기타사업	⋮			
합 계				

【서식 4-2】(예시)

결 산 총 괄 표

법인명 :

(단위 : 원)

세입					세출				
과목	예산액 (A)	결산액 (B)	비교 증감 (A-B)	구성 비율 (B/C)	과목	예산액 (A)	결산액 (B)	비교 증감 (A-B)	구성 비율 (B/C)
계		(C)					(C)		

【서식 4-3】(예시)

세입(세출)결산서

법인명 :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A)	결산액 (B)	비교 증감 (A-B)	산 출 기 초
관	항	목				

【서식 4-4】

대 차 대 조 표

법인명 :

(단위 : 원)

자 산			부 채 및 자 본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서식 4-5】

손 익 계 산 서

법인명 :

(단위 : 원)

비	용		수	익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서식 4-6】(예시)

재 산 현 황

법인명 :

(단위 : 원)

구 분	종 별	금 액	비 고
기본재산			
보통재산			
계			

☞ - 종별란에는 현금, 부동산으로 분류

- 재산이 부동산일 때에는 비고란에 건물, 임야 등으로 구분하여 면적 기재

- 기본재산이 현금일 경우는 잔액증명서 제출

※ 등기부등본은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확인가능

【서식 4-7】(예시)

보 통 재 산 현 황

1. 총 괄

(200 . 12. 31현재)

구 분	수 량	소재지	취득원인	평 가 액	비 고
예 금					
주 식					
채 권					
부 동 산					
기 타					
총 계					

2. 분류별 세부내역

재 산 명	종 류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총 계				

※ 1) 보통재산 현황에는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기재

2) 분류별 세부내역에는 총괄에서 분류된 재산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3) 분류별 세부내역의 비고에는 발생 또는 보유사유와 집행계획을 간략히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서식 4-8】(예시)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법인명 :

재 산 명	재 산 변 동 내 역		변 경 사 유	변경일자	비 고
	변동 전	변동 후			

【서식 4-9】(예시)

세 부 사 업 실 적

법인명 :

일시(기간)	장소	참여(수혜인원)	사업예산(원)	사업내용

【서식 5-1】(예시)

사단법인 점검표

법인명		본원 분원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허가번호		설립허가일		

■ 법인사무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추진실태
Ⅰ. 민법 제97조	1.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		
	2.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		
	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		
	4. 파산신청 해태 등		
Ⅱ. 목적사업의 이행	1.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		
	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		
	3. 정관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		
Ⅲ. 수익사업의 적정성	1. 과도한 입장료, 참가비 등 부과 여부		
	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		
Ⅳ. 학점은행제	1. 허위.과대 광고 행위 여부		
	2. 부실 운영으로 다른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3. 기타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 지 여부		
Ⅴ. 임원 등	1. 임원·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		
	2.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		
Ⅵ. 사업계획의 이행 등	1. 설립허가시 및 매년도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		
	3. 허위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		

Ⅶ. 정관변경 등	1.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		
	2.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		

■ 재산변동 등 회계감사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비 고
Ⅰ. 기본재산 확보 여부	1. 기본재산 확보 여부		
Ⅱ. 기본재산 처분 여부	1.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 여부		
	2. 등가 이하의 다른 재산과의 교환 여부		
	3. 자의적인 담보 설정행위 여부		
	4. 법인 목적과 무관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연대채무 등 부담행위 여부		
	5. 기본재산의 성질을 변경한 보존.이용.개량행위 여부 등		
Ⅲ. 법인재산의 분배	1. 대표자 등 임원에 대한 과도한 임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 여부		
	2. 법인 차량, 휴대전화, 사무실 등의 임의 사용 여부		
Ⅳ. 기 타			

이상의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명 :

대표자(대리인) (인)

▣ 건의사항

▣ 제도개선 건의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 6-1】(규칙 별지 제4호) <개정 2014.6.19>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연월일
해산사유

「민법」 제86조제1항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유산청장
ㅇㅇ시·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시·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6-2】(예시)

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신청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이사·청산인)		생년월일	
	청산인주소		전화번호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취임일

위 청산인(들)은 20ㅇㅇ년 ㅇ월 ㅇ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청산인으로 선정되었고, 20ㅇㅇ년 ㅇ월 ㅇ일 청산인회의 결의로 ㅇㅇㅇ이 대표 청산인으로 선정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유산청장 **귀하**
ㅇㅇ시·도지사

구비서류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2. 총회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의 경우) 1부

【서식 6-3】(규칙 별지 제5호) <개정 2014.6.19>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유산청장
ㅇㅇ시·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 확인 → 결재 → 결과 통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시·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6-4】(규칙 별지 제6호) <개정 2014.6.19>

청산종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민법」 제94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유산청장
ㅇㅇ시·도지사 귀하

신고인(청산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공문 작성 예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통지

※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법」 제5조(설립허가)를 근거 규정으로 추가 적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통지(사단법인 ○○○○협회)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하오니,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개요

가. 법인명: 사단법인 ○○○○협회
나. 대표자: ○○○
다. 소재지:
라. 설립목적:
마. 주요사업:

2. 허가조건

가.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 정한 내용을 준수할 것
나. 법인 설립허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법인등기를 필할 것
다.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 및 사업 등과 관련이 없는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 제반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라. 설립허가 신청서류 상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상기 각 사항을 위반할 경우,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3. 제출 및 보고 사항

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제출할 것
나.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할 것

붙임 : 법인 설립허가증(별첨) 1부. 끝.

【공문 작성 예시】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통지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사단법인 ○○○○협회 정관변경 허가 통지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민법」 제42조 내지 제43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정관변경을 허가하오니 향후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가.

나.

다.

(참고) 정관 변경에 의해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사항에 따른 등기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문체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등기일 기준 10일 내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을 추가로 명시

붙임 1. 개정 정관사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공문 작성 예시】 비영리법인 설립(정관변경) 반려 통지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 반려 통보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귀하(귀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을 반려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 개요

가. 법인명 : 재단법인 ○○○○재단

나. 대표자 : ○○○

다. 소재지 :

라. 설립목적 :

마. 주요사업 :

2. 반려 사유

가. 서류 미비 :

나. 사업실현 가능성 미흡 :

다. 재정적 기초 및 사업 수행능력 미비 :

. 끝.

【공문 작성 예시】서류 보완 요청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 보완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귀하(귀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 개요

가. 법인명 : 재단법인 ○○○○재단
나. 대표자 : ○○○
다. 소재지 :
라. 설립목적 :
마. 주요사업 :

2. 보완 요청 사항

가.
나.
다.

3. 보완 기간 : '26.00.00.까지(00일) (참고 :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

. 끝.

【공문 작성 예시】처리기한 연장 통지(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7.2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행정절차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처분의 처리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한 처분의 내용				
접수 일자			당초 처리기간	
연장 사유				
처리 예정 기한				
처리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안내사항				

※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공문 작성 예시】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통지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재단법인 ○○○재단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통지

1. 재단법인 ○○○재단 0000-0000(2025.03.21.)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법인의 설립허가증을 아래와 같이 재교부 하오니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 개요

○ 법인명 : 재단법인○○○재단(허가번호 : 제○○○호)

○ 소재지 :

○ 대표자 : ○○○

○ 주요사업 :

나. 재교부 사유 : 대표자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붙임 : 법인설립허가증(재교부) 1부. 끝.